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50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김남희
임종득 · 서미화 · 김대식
김선교 · 배현진 · 남인순
송석준 · 유용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준용 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민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따른다”를 “따르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날 또는 말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4항 후단”으로, “없는 경우로서”를 “없거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또는 거주 지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양정보를 공개하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입양정보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20일이 경과”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로, “공공기관”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따르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 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
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
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
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
용 및 공개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
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
하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
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청
구서를 제출한 날 또는 말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양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 <단서 삭제> 이 경
우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또는 거주 지

<신 설>

<신 설>

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입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양정보를 공개하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

한다.

⑦ 제4항 후단-----

-----없거나 친생
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⑧ 입양정보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20일이 경과”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로, “공공기관”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본다.

⑨ -----제8항-----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